

대구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9나19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9나191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. 2. 12 선고 2018가단553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백

담당변호사 이원호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20. 10. 21.

판결 선고 2020. 11. 11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. 2. 12. 선고 2018가단55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14.

11. 18. 접수 제58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1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4면 2~4행의 '③, ④'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③ 갑 제12호증, 을 제13,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2019. 1. 29. 피고를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,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19. 9. 10. 각하처분을 하였고, 원고가 2019. 10.경 다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,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, 대구지방법검찰청 영덕지청 검사는 2020. 2. 21.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불기소처분을 한 점, ④ 피고가 제1심 법원 제5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(을 제6호증) 원본을 제시하였고 그 후 감정인 지정결정까지 이루어졌으나1), 원고 스스로 위 문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을 철회한 점』

○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'상당 부분'을 '상당 부분을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3행의 '갑 제7호증,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'를 '을 제1호증의 2의 기재'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11행의 '원고가 지급할'을 '피고가 지급할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9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살피건대, 이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. 11. 10.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90,097,5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, 을 제9,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7,200만 원으로 위 감정가와는 약 1,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,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, ② 원고는 1934년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80세의 고령이기는 하였으나,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4,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(위 2009년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상속인이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 2,500만 원과 위약금 400만 원 합계 2,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, 원고가 패소하였다), ③ 원고는 그 후 다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거래 경험이 수회 있는 점, ④ 원고는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경북 영암군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균형하거나 원고가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대규

판사권준범

판사에혁준

별지

제출하지 않았다'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, 위와 같이 피고는 을 제6호증 원본을 제1심 법원에 제시하였다.